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서 위탁받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5. 24. ~ 5.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찰관 1명”을 “감찰관 1명, 인사정보관리단장 1명”으로 한다.

제4조의4를 제4조의5로 하고,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인사정보관리단장) ①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탁된 권한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제53조제2항 후단 중 “49명”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정원 중”을 “정원 중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정정 2명)은 법무부 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충원하여야”를 “충원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법무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법무부 정원 15명 중 2명(5급 2명)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감사

원 소속 공무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6 중 총계 “758”을 “778”로 하고, 일반직 계 “727”을 “74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17”을 “731”로 하고, 전문경력관 2 다음에 “경찰공무원 계 2”를 신설하며, 경찰공무원 계 2 다음에 “총경 이하 2”를 신설하고, 검사 계 “25”를 “29”로 하며,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8”을 “9”로 하고, 검사(사법연수원부원장 1명 포함) “17”을 “20”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하부조직) ① (생략)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u>감찰관 1명</u>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u><신설></u>	제4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u>감찰관 1명</u> , 인사정보관리단장 1명 ----- -----.
	<u>제4조의4(인사정보관리단장) ①</u> <u>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u> <u>②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탁된 권한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u>
<u>제4조의4 (생략)</u> 제53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u>49명</u> 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u>제4조의5 (현행 제4조의4와 같음)</u> 제53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50명</u> ----- -----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

③ ----- 정원 중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경정 2명)은 법무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 충원해야 ---. ----- 협의해야 -----.

④ 제3항에 따라 법무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법무부 정원 15명 중 2명(5급 2명)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 의 해 야 한 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6]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5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58</u>	<u>778</u>	+20
·	·	·	
·	·	·	
일반직 계	<u>727</u>	<u>741</u>	+14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u>717</u>	<u>731</u>	+14
전문경력관	2		
<u>경찰공무원 계</u>	<u><신 설></u>	<u>2</u>	+2
<u>총경 이하</u>	<u><신 설></u>	<u>2</u>	+2
검사 계	<u>25</u>	<u>29</u>	+4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u>8</u>	<u>9</u>	+1
검사(사법연수원부원장 1명 포함)	<u>17</u>	<u>20</u>	+3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2